

2025년 제9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규칙 제867호

붙임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867호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8조 앞의 “제5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9조를 제21조로 하며,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7조로 하며,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 조례 제36조의2에 의하여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 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제1항제2호”를 “제15조제1항제2호”로,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15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1항제2호”를 “제15조제1항제2호”로 한다.

10. 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원 타당성 평가 기준) ① 시장은 시설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투자유치위원회에 투자 보조금 심의를 상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미달된 경우라도, 시장이 신성장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의 제목“(보조금의 결정·정산)”을“(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 칙

별표 3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안)

여주시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서

□ 기업명 :

주요내용	세부항목	점수표						점수
		1	3	6	9	12	15	
사업 실적평가 (60점)	1. 평균매출액	1	3	6	9	12	15	
	2. 영업이익률	1	3	6	9	12	15	
	3. 부채비율	1	3	6	9	12	15	
	4. 기업신용등급	1	3	6	9	12	15	
투자사업 계획평가 (40점)	5. 신규투자규모	최대 30점						
	6. 투자기간	2	4	6	8	10		
조정점수	7. 별표 3의7 참조							
총 계								

타당성 평가기준(제16조 관련)

<사업실적평가>

① 최근 1년 이상 ~ 3년 미만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150억 원 이상	15
100억 원 이상 ~ 150억 원 미만	12
5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	9
3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6
1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3

- * 최근 3년 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 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단,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 1년도 매출액)
- ※ 다만, 사업영위기간 1년 미만 기업과 평균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② 최근 1년 이상 ~ 3년 미만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점 수
7% 이상	15
5% 이상 ~ 7% 미만	12
3% 이상 ~ 5% 미만	9
1% 이상 ~ 3% 미만	6
1% 미만	3

- * 최근 1년 이상 3년 미만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직전1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2) + (\text{직전2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1)]}{3}$
- * 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손익}}{\text{매출액}} \times 100$
- ※ 사업영위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직전 1년도 매출액 영업이익률로 평가함
- ※ 다만, 사업영위기간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③ 부채비율

부채비율	점 수
30% 미만	15
30% 이상 ~ 60% 미만	12
60% 이상 ~ 90% 미만	9
90% 이상 ~ 120% 미만	6
120% 이상 ~ 150% 미만	3

* 최근 결산일기준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 다만, 사업영위기간 1년 미만 기업과 부채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에는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④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점수
BBB- 이상	15
BB- 이상	12
B0 이상	9
CCC- 이상	6
CCC- 미만	3

※ 기업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점 부여

※ 보조금 신청 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로 확인

<투자계획평가>

⑤ 신규투자규모 : 최대 30점

평가척도	점수(최대 30점)
신규투자금액	10억 원 당 1점
투자사업장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 당 0.5점

* (신규투자금액) 설비(건설+기계장비)건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 부지매입금 (단, 제17조제2항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함)으로 계산, (상시고용인원) 신규 투자 사업장의 최근 1년간(공장등록일 또는 공장가동일부터 보조금 신청일 직전 1년) 평균 상시고용인원에서 10명을 감한 값으로 계산하며 소수점은 절사함

⑥ 투자기간

※ 산출근거 : 착공신고일 () ~ 공장등록일 () =

착공일로부터 공장등록일까지의 기간	점 수
1년 이내	10
1.5년 이내	8
2년 이내	6
2.5년 이내	4
3년 이내	2

<조정점수>

⑦ 조정점수

유 형	점 수
본사 또는 R&D센터	각 15점씩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중 에너지신산업*	
벤처기업*(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수소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또는 강소기업*	

*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별표 1>

*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 (확인유형: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로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소전문기업확인서」 로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확인서」 로 확인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투자완료 후 정산 시 재평가 항목임

[별지 제18호서식] (개정안)

물류, 도·소매업 투자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신청 기업	명칭		대표자(국적)	
	설립일	년 월 일	공장 등록일	년 월 일
	공장(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투자업종		업종(분류코드)	
	전화번호		F A X	
시와 투자협약 체결일		년 월 일	사업 개시일	년 월 일
투자금액		금 천원	상시고용인원	명
사업장 소재지				
투자 시설 내용	계	금 원		
	토지	m ²	투자금액	원
	공장 신·증설	m ²	투자금액	원
	기타	m ²	투자금액	원
공장 착공일		년 월 일	공장 준공일	년 월 일
보조금 담보 (담보기간)		예) 보증보험증권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		금 천원		
<p>「여수시 투지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또는 대리인) : (서명/인)</p> <p style="text-align: right;">(전화 :)</p> <p>여수시장 귀하</p>				

*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은 해당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 및 직접 투입된 고용인원을 기재한다.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 투자계획서 1부(별지 제13호서식)
2. 투자협약서 1부
3.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외국인)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건축물대장 각 1부
6.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계약서 1부
또는 토지매매, 분양, 임대차계약서 사본 (납부영수증 포함) 1부
7.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8. 보증보험증권 1부
9. 투자이행확약서 1부
10. 보조사업 청럼 이행서약서 1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준용)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12. 기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 ①·② (생 략) ③ 보조금 유형별 신청기한은 <u>제14조</u>를 준용하여 적용한다.</p> <p>제13조(사업지원서비스업 보조금) ① ~ ③ (생 략) ④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지원서비스업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유형별 신청기한은 <u>제14조</u>를 준용하여 적용한다.</p> <p><u><신 설></u></p>	<p>제9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15조</u>-----.</p> <p>제13조(사업지원서비스업 보조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제15조</u>----- -----.</p> <p><u>제14조(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 조례 제36조의 2에 의하여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제14조(보조금의 지원 신청) ①</u>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기업의 투자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 략) <u><신 설></u></p>	<p><u>제15조(보조금의 지원 신청) ①</u>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u></p>

② 외국인 생활개선사업비 지원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토지매입비는 제14조제1항제2호의 용지매입 보조금 신청기한을 따르며, 학교시설로 개보수 및 건축물 신축 또는 건축물 매입,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의 보조금 신청은 제14조제1항제3호의 투자시설비·시설보조금의 신청기한을 따른다.

③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부지구입비는 제14조제1항제2호의 용지매입 보조금 신청기한을 따른다.

<신 설>

지원 보조금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② -----

----- 제15조제1항제2호 -----

----- 제15조제1항제3호 -----

-----.

③ -----
----- 제15조제1항제2호 -----

-----.

제16조(보조금의 지원 타당성 평가

기준) ① 시장은 시설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투자유치위원회에 투자 보조금 심의를 상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3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미달된 경우라도 시장이 신성장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결정·정산) ①

시장은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제출받아 투자업종 및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② ~ ④ (생략)

제16조·제17조 (생략)

제5장 보칙

<신설>

제18조 ~ 제21조 (생략)

제17조(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

① -----

----- 제20조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제19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삭제>

제5장 보칙

제20조 ~ 제23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